

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7. 12. 화순군수
- 나. 회부일자 : 97. 12. 29
- 다. 상정일자 : 97. 12. 29 (제59회 정기회 제14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자 : 내무과장 최영옥

나. 개정사유

- 화순군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장학진흥 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(안 제7조)
 - 경영정책실장 - 삭제
 - 기획실장 → 기획감사실장으로 명칭 변경
- 간사의 변경 (안 제11조)
 - 정책개발계장 → 교육계장

3.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 개정안은 화순군 조례 제1494호 ('97. 7. 18)로 화순군 행정 기구가 조정되어 장학 사업이 내무과로 이관 되어 장학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명확한 규정을 위한 개정 조례로서,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요지

"생략"

5. 토론 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

"원안가결"

첨부 : 화순군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

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3항중 "경영정책실장" 을 삭제하고 "기획실장" 을 "기획감사실장" 으로 한다.

제11조 제2항중 "정책개발계장" 을 "교육계장"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7조 (구성)</p> <p>③ 위원은 군 경영정책실장, 기획 실장, 내무과장, 교육청 학무과장, 경찰서 방범과장 그리고 사회단체, 직능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중에서 장학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.</p> <p>제11조 (간사)</p> <p>② 간사는 정책개발계장이 된다.</p>	<p>제7조 (구성)</p> <p>③ 위원은 군 기획감사실장, 내무과 장, 교육청 학부과장, 경찰서 방법과장, 그리고 사회단체, -</p> <p>제11조 (간사)</p> <p>② - - - 교육계장 - - - - -</p>